

2020.09.14.

내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된다. **근로시간 감소** 또는 **인건비 상승** 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

공인노무사 신 정 욱

2018. 3. 20.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2018. 6. 29.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법정유급휴일이 된다. 이 개정법령은 상시 근로자 수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행시기가 다르다.

-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 2020. 1. 1.부터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 1. 1.**부터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 1. 1.부터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5, 6/6,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25,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및 대체공휴일이 모두 법정 유급휴일이 된다.

2021년도 달력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일수는 총 9일(1/1, 설날 전날, 설날, 3/1, 5/5,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다.

이와 같은 법정 유급휴일의 확대는 각 기업 현장의 인사노무관리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 먼저 법 이론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쉬더라도 월급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 날 근로하게 되면 **통상임금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일(working day)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 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하면, 이는 휴일의 대체로서 1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 이 달의 급여는 변동이 없다. 휴일의 대체를 하면 원래 휴일이었던 날의 근로가 평일근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휴일의 대체를 하려면 종전에는 취업규칙에 규정만 두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 1.부터 적용중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부터 적용됨).

평일 공휴일인 일수는 매년 상황이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9일, 2022년도는 11일, 2023년도는 10일, 2024년도는 13일이다. 이와 같이 법정 유급휴일이 확대되고, 연차휴가는 이와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상황은 각 기업들이 처한 인력상황에 따라 충격의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

즉,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모두 쉴 수 있는 사업장은 **연중 근로시간의 감소**를 고민해야 하고, 이와 같은 날 쉴 수 없는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인건비의 상승**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 유급휴일의 확대는 2022. 1.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고민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글로만 전개하니 내용이 와 닿지 않는다. 표와 숫자로 정리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2021년도	신입사원	1년근속	3년근속	5년근속	21년근속
연차유급휴가	11	15	16	17	25
법정유급휴일	9	9	9	9	9
합계	20	24	25	26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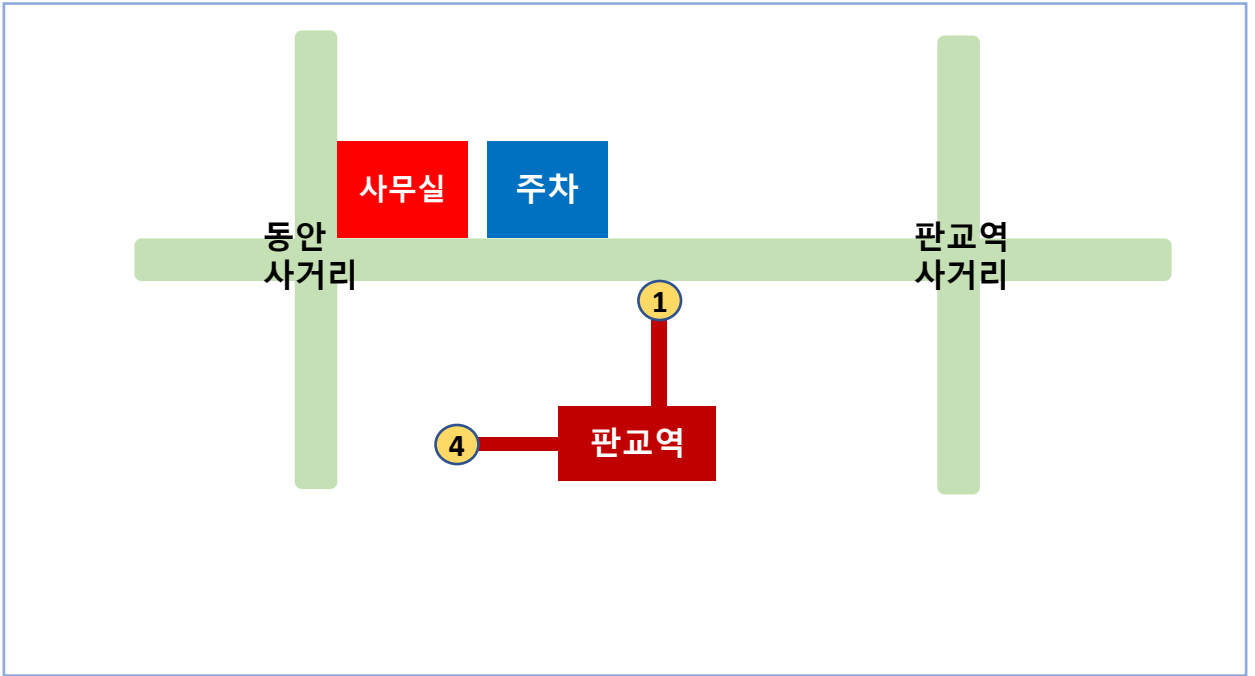
실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위 표에 나타난 일수만큼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을 근로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처럼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인건비 규모**를 금전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시급	신입사원	1년근속	3년근속	5년근속	21년근속
8,720	1,395,200	1,674,240	1,744,000	1,813,760	2,371,840
9,000	1,440,000	1,728,000	1,800,000	1,872,000	2,448,000
9,500	1,520,000	1,824,000	1,900,000	1,976,000	2,584,000
10,000	1,600,000	1,920,000	2,000,000	2,080,000	2,720,000

실 수 없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전액 지불하고, 법정유급휴일에도 모두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사용자가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1일 8시간으로 산정)을 금전으로 환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시급	신입사원	1년근속	3년근속	5년근속	21년근속
8,720	1,709,120	1,988,160	2,057,920	2,127,680	2,685,760
9,000	1,764,000	2,052,000	2,124,000	2,196,000	2,772,000
9,500	1,862,000	2,166,000	2,242,000	2,318,000	2,926,000
10,000	1,960,000	2,280,000	2,360,000	2,440,000	3,080,000

각 기업에서 임금수준과 인력상황에 따라 위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정신없이 흘러온 2020년이 어느 덧 채 4개월이 남지 않았다. 중소기업 경영진으로서 는 대비해야 할 고민은 산적해 있고 어김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기만 하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801호 (삼평동, 서건타워)

주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지하철 : 신분당선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거리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칼럼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31-704-1223
팩스 031-8016-3498

신정욱 공인노무사
tjlove73@naver.com

김재연 공인노무사
cplaeony@naver.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s628@naver.com